**사단법인한국포장기술사회정관**

[1999.04.01 제정]

[2016.03.25 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본회는사단법인한국포장기술사회(이하“본회”라한다)라칭하고영문으로는Korea Association of Packaging Professional Engineer, (약칭KAPPE)라표기한다.

**제2조(목적)**본회는포장기술사직무의진보, 개선및포장기술사의품위보전과기술향상을도모하며기술사의직무수행능력을개발증대하고해외포장기술과의교류를통하여국가포장산업기술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무소)**본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두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시이사회의의결을거쳐국내타지역에사무소와지부를둘수있다.

**제4조(사업)**본회는제2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포장및물류산업관련기술의연구, 개발에관한사항

2. 포장및물류산업관련기술의교육, 훈련, 지도및정보수집과교류에관한사항

3. 행정관청및공공기관이위탁하는업무에관한사항

4. 포장및물류기술의진흥을위한정책의심의와건의및정부시책에대한지원, 협조에관한사항

5. 포장및물류기술에관한해외기술교류와유대강화에관한사항

6. 포장기술사의직무개발과능력향상에관한사항

7. 포장및물류기술의조사, 진단, 판단, 중재에관한사항

8. 포장및물류클레임에대한유권해석에관한사항

9. 포장기술및물류에관한강습회, 강연회, 간담회및기타의학술활동과국내의산업시찰의실시에관한사항

10. 포장기술사업무의분쟁에관한사항

11. 한국기술사회및포장․물류관련단체와유대강화에관한사항

12. 기타본회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에관한사항

**제2장회원**

**제5조(회원의종류및자격)** 본회의회원의종류및자격은다음과같다.

1. 정회원: 국가기술사자격시험에서합격한후포장기술사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본회의입회를희망하는자

2. 준회원: 포장기술사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가입비및연회비를2년이상납부하지않은자

3. 명예회원:포장기술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지않으나, 포장산업계에명성과존경을받고있는원로로써본회발전에도움이된다고판단되는자

4. 법인회원:포장산업계중포장연구소나포장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법인또는개인기업으로서본회발전에지원할수있다고판단되는업체

**제6조(회원의가입)**

①정회원과명예회원, 법인회원(이하“회원”이라한다)이되고자하는자는소정의요건을갖추어입회신청또는추천을받아이사회승인을받아회원이된다.

②회원으로입회하고자하는자는본회에서정한가입비및연회비를납입하여야한다.

**제7조(회원의권리)**

①본회의정회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권리를가지며, 총회에출석하여발언하고의결권을갖는다.

②회원은본회의임원에대한피선거권을가진다. 다만, 준회원, 명예회원, 법인회원은피선거권을갖지아니한다.

**제8조(회원의의무)**

①회원은본회의정관, 총회, 임원회의(이사회)의제의결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 총회가정하는바에따라연회비를성실히납부할의무를지닌다.

②회원은본회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로하는자료제출등제반사업수행에협조할의무를가진다.

**제9조(회원의탈퇴)**

①회원은탈퇴원을제출함으로써임의로본회에서탈퇴할수있다.

②회원은제5조에의한자격을상실하였을경우자연히탈퇴한것으로한다.

③회원이탈퇴할때는기납부된연회비에한하여미도래기간분에해당하는금액을반환한다.

**제10조(제명)**

①회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할때에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제명할수있다. 이경우총회개최10일전에해당회원에게제명의사유를통지하고총회에서소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본회의명예와권익을손상시켰을때

2. 본회의사업수행을심히방해하거나방해하려는행위가있을때

3. 본회정관, 제규정또는제결의사항을위반하였을때

**제3장임원**

**제11조(임원)**본회는다음의임원을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1인이상

3. 총무이사1인

4. 이사5인이상

5. 감사2인이내

**제12조(임원의선임)** 회장은총회에서정회원의3분의2이상참석, 과반수찬성으로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임기)**

①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의임기는3년으로하고, 1회한연임할수있다.

②감사는3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③명예회장은전임회장중에선임하고1회연임할수있다.

**제14조(임원의직무)**

①회장은본회를대표하고회의를총괄하며, 임원회와총회의의장이된다.

②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며회장유고시이를대행한다.

③명예회장은임원회에출석하여자문을응하고, 회의전반에관하여발언할수있다.

④감사는본회의재정및회무일체를감사하고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⑤총무이사는회장을보좌하며본회의서무, 제정, 행정등기타제반업무를담당한다.(다만필요시각업무를분장하는별도이사를두고업무를분장할수있다.)

**제15조(보선)**임원중결원이생길때에는필요에의하여총회에서보궐선임할수있으며보선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단, 전임자의임기가6개월미만일경우에는다음각호에의거잔여임기를수행한다.

1. 회장이궐위된경우에는부회장이전임회장의잔여임기를수행한다.

2. 부회장이궐위된경우에는총무이사가전임부회장의잔여임기를수행한다.

3. 이사가궐위된경우에는부회장의추천으로회장이새로임명한다.

4. 감사가모두궐위된경우에는고문이지명하는자가전임감사의잔여임기를수행한다.

**제16조(고문)**

①전직회장에대하여임원회의결의로명예회장으로추대할수있으며명예회장은당연직이사로한다.

**제17조(임원의자격및선출)**

①본회의임원은비상근으로총회에서선출한다.

②다음각호의해당하는자는임원이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5. 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③이사와감사는상호겸직할수없다.

④임원을선임한때에는임원취임예정자의이력서및취임승낙서와임원선임을결의한총회의회의록사본을갖추어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장총회**

**제18조(총회의종류)**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①정기총회는매년2회이내로개최하되3월에연간총회일정을공포하고, 회장이이를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또는재적인원3분의1이상의요청으로의하여회장이이를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의결사항)**

①총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회칙의개정및수정

2. 회장의인준과명예회장, 총무이상, 감사, 이사의선임

3. 사업계획, 예산및결산의승인

4. 회원의징계

5. 기타총회에서의결할사항

②총회및임시총회의의사는출석회원의과반수로의결하며불출석회원의의결권은회장에게위임한것으로본다.

**제20조(임원회의(이사회))**

①임원회의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회장이소집한다.

②임원회의는본회의중요사항및총회부의안건을심의의결하며, 출석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21조(위원회등)**

①본회는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②위원회는총회및이사회에서위임한사항을심의의결한다.

③위원회는구성은이사회에서정한다.

**제22조(회의록)**총회의회의록은의장과총회에서지명한임원2인의서명날인을받아본회에보존하여야한다.

**제5장재산및회계**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사업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24조(재원)**본회의재원은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수수료, 잉여금및기타수입으로한다.

**제25조(회비부과징수)**회비의부과및징수방법, 수수료등의결정은총회에서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및수지예산)**

①본회는매회계연도개시후, 2월이내에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수립, 편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②총회승인전까지의필요한경비의지출은전년도에준해서집행하고승인후소급정산한다.

**제27조(사업실적및수지결산)**본회는매회계연도종료후2월이내에사업실적및수지결산서를작성하여사업실적을총회에보고하고, 수지결산서는총회의승인을받아야하며, 수지결산서는재산목록및감사결과보고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제28조(기금의조성)**

①본회의안정적운영을기하고장기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자체기금을조성할수있다.

②기금의규모및조성방법은따로정한다.

**제6장해산및청산**

**제29조(해산)** 본회를해산하고자할때에는총회의의결을거쳐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0조(청산)**

①해산할경우본회의청산인은이사들로하며, 대표청산인은회장으로한다.

②본회의청산감사는감사로한다.

③본회의청산시잔여재산은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국가또는공익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에기증한다.

**제7장보칙**

**제31조(제규정)** 본정관으로정한이외의필요한사항은이사회에서따로정한다.

**제32조(보고사항)** 다음각호의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과수지예산서:사업연도개시후2월이내.

2. 사업실적과수지결산서:사업연도종료후2월이내.

3. 총회회의록사본:종료후2주일이내

4. 기본재산권의취득․양도․교환, 담보또는기체(사업연도내에상환하는일시차입제외) :시행1개월전

**제33조(민법준용)** 본정관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민법제3장법인의관계규정을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회원)** 본정관이시행되기전가입한회원은본정관의시행과동시에가입된것으로본다.

**부칙<2016.03.25>**